**‘우주과학연구회’ 동아리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동아리 명칭]**

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우주과학연구회(C.S.I.)로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천체 관측 동아리로서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천체 관련 학술 활동을 진행한다. 주로 관측 활동과 스터디를 통해 천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① 본 동아리의 회원자격은 제3장의 제1조 ‘회원 자격 및 의무’를 따른다.

**제4조 [동아리 소재]**

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2장 임원진**

**제1조 [임원진 구성과 임기]**

①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부장, 홍보부장, 관리부장, 서기로 정의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의 임기는 최소 1학기로 한다.

③ 임원진은 상황을 고려하여 임원진 회의를 통해 본인 직위를 다른 부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조 [임원진 선출 방식]**

① 임원진의 선출은 해당 학기 종강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

② 임원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 해당 학기 임원진은 총회 참석자와 함께 다음 학기 임원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임원진의 역할 및 지위]**

①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내, 대외적 최고 대표자이며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회장이 부재할 경우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③ 학술부장은 정기 학술에 대한 준비와 진행을 수행한다.

④ 홍보부장은 동아리 활동에 관한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⑤ 총무는 동아리 회비를 걷고, 임원진과 함께 동아리의 재정관리를 수행한다.

⑥ 관리부장은 동아리방 비품 관리와 청결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⑦ 서기는 동아리 임원진 회의 내용 기록 및 매 월 동아리 활동보고서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⑧ 모든 임원진은 다음 학기 임원진에게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제3장 회원자격 및 관리**

**제1조 [회원 자격 및 의무]**

① 본 동아리는 회원 자격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

② 본 동아리 회원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반드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1. 신청 기한 내에 구글 폼 링크를 통한 동아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2.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임원진은 회비 납부 채팅방에 당사자를 초대한다.
3. 해당 학기의 회비를 기한 내 납부하면 임원진은 계좌 확인 후 정규 채팅방에 초대하여 가입완료 처리한다.

**제3조 [회원의 탈퇴]**

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임원진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탈퇴가 성립된다.

② 본 동아리는 아래와 같은 경우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폭언과 폭력 등 동아리 활동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2. 동아리방 비밀번호를 외부인에게 유출할 경우
3. 동아리방을 청결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4. 동아리에 피해를 준 행동을 한 경우
5. 기타 임원진 협의 하에 제명사유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 [회원의 제명 처분]**① 본 동아리 회원이 제 3조 2항 중 5개의 사유에 의해 제명 될 경우를 설명한다.

② 회원이 제명 될 경우 동아리 재가입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회원의 제명 처분은 임원진 7인 중 4인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④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1번의 이의 신청 기회가 주어지고, 제명 된 회원은 긴급 총회 개최 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소명 가능하다.

⑤ 긴급 총회에서 임원진을 포함한 출석 인원의 ⅔ 이상이 제명 및 복권 여부를 결정 가능하다.

⑥ 1번의 이의 신청을 통해 복권 된 회원은, 다음 제명 처분 시 동아리 재가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4장 정기 학술 및 회의**

**제1조 [정기 모임]**

① 본 동아리의 정기 모임은 매주 월요일 일몰 시간으로 한다.

② 학기마다 정기 모임과 관련하여 운영 방식 변경이 유동적으로 있을 수 있다.

**제2조 [임원진 회의]**

① 임원진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② 서기는 임원진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총회]**

① 본 동아리의 총회는 매 학기마다 동아리의 첫 모임과 마지막 모임에 한 번씩, 총 두 번 진행한다.

② 본 동아리의 총회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제4조 [긴급 총회]**

① 본 동아리 회칙 개정 및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회장은 직권으로 긴급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 동아리의 긴급 총회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제5장 재정관리**

**제1조 [수입]**

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

**제2조 [회비]**

① 임원진을 제외한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학기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② 회비는 20,000원으로 정한다.

③ 회비의 환불은 개강총회 끝난 직후부터 불가능하나, 국가적 재난과 같은 예외 상황이 있을 경우 임원진은 합의 하에 회비 환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결산보고]**

① 회장과 총무는 총회에서 해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제6장 동아리 등록**

**제1조 [등록]**

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7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제1조 [물품]**

① 부득이하게 개인 짐을 놓았을 경우 2일 내로 가져간다.

1. 2일이 지났을 경우 이를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망원경은 자유롭게 사용하되 정리와 관리를 철저히 한다.

1. 만약 망원경 부품을 망가뜨릴 경우 당사자는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2. 망가뜨린 부품과 관련하여 임원진 회의를 거쳐 해당 부원의 책임 정도를 정하고, 회비의 일정액을 사용하여 새 부품을 구매한다.

**제2조 [청결]**

① 동아리방 내에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②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밖에 버린다.

③ 본 동아리 부원은 동방 내 쓰레기가 있을 때 정리할 의무가 있다.

④ 침대와 장판, 이불은 여러 부원이 사용하므로 청결히 사용한다.

**제3조 [비밀번호]**

①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는 유출해서는 절대 안되며, 유출 시 제3장 제3조 2번에 의거하여 해당 부원을 제명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는 해당연도의 첫 학기 회장단이 결정하며, 보안을 목적으로 임원진 회의에서 비밀번호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가 개정될 경우, 정기 모임 당시 부원들에게 공지한다.

**제4조 [출입]**

① 동아리 회원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은 특수사유(임원진의 동의결과)가 아닌 경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제8장 부칙**

**제1조 [회칙 발효]**

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2.26]

개정 1판 [2020.03.24]

개정 2판 [2020.09.01]

개정 3판 [2022.09.07]

개정 4판 [2023.03.04]

개정 5판 [2024.03.14]

**제2조 [회칙 개정]**

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② 단, 동아리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원진이 관련하여 회칙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임의로 추가할 수 없고, 추가된 회칙은 반드시 총회에서 알려야 하며, 반대의 의견이 부원의 2/3이상 표명될 경우 회칙 수정을 취소한다.)